

#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·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 경과

가 2006. 10. 13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10. 13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58호)

다 2006. 10. 24 :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,  
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문화관광과장 신태영)

### 가 제안이유

-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, 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나 주요내용

#### 1) 특산물판매장의 위치 및 규모(안 제3조)

- 대방동 681-9번지, 지상 3층, 철근콘크리트구조, 연면적 1,619.4m<sup>2</sup>

#### 2) 특산물판매장의 기능(안 제4조)

- 특산물의 전시·판매
- 농·어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토속음식 판매
-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일상생활용품 판매
- 우리시 관광홍보를 위한 안내
- 기타 판매장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영업

#### 3)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음.(안 제5조)

#### 4) 연간 사용료 요율을 평정가격의 1,000분의 50으로 함(안 제8조)

## 다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제정조례안은 2004. 2. 17 준공된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제2항(재산의 보유 운용)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
- 특산물판매장 사용수익허가 현황은

구분	면 적(m <sup>2</sup> )	사용기간	사용자		연간 사용료(천원)
			주 소	성 명	
계	1,596m <sup>2</sup> (864평)			3명	
1층	548m <sup>2</sup> (166평)	06. 06. 13 ~09. 06. 12	진주시 하대동 435-1	홍종표	26,000
2층	524m <sup>2</sup> (158평)	06. 02. 06 ~09. 02. 05	사천시 대방동 681-9	스페이스 월드코리아	11,370
3층	524m <sup>2</sup> (158평)	05. 04. 28 ~08. 04. 27	사천시 선구동 24-24	박영란	11,423

- 관리운영상 문제점(2006 종합감사시 지적사항)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서 행정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재산으로서 그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
-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의 1층은 특산물판매장으로 2~3층은 사무실과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행정재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부적정한 관리 상태임.
-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